

#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5. 3. 16

나. 회부일자 : '95. 3. 16

3. 제안이유

- 「세계화」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현재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
- 「무한경쟁시대」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당초 "국제화추진위원회"의 조례명을 "세계화추진위원회"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완비코자 함.
- 위원회의 기능중 세계무역기구(WTO)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에 대한 대처방안강구등 기능을 보강하고 구성인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함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세계화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조례명칭 변경과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고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
첫째, 조례 제명과 제1조 (목적)중 "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" 를 "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" 로 하고

둘째, 제2조 제2호와 제5호 및 제8호중 "국제화"를 "세계화"로 하고

동조 제3호 "UR, GR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" 을 "세계무역기구(WTO)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 과제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"으로 하고

셋째, 제3조 제1항중 "20인 이내"를 "30인 이내"로 하고 동조 제3항 "총괄반장"을 "담당계장"으로 하며

넷째, 제7조 제2항중 "위원장이" 위촉한다를 "도지사가" 위촉한다로 하는등

본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완비하고

WTO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 과제에 대한

대처방안 강구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 6. 참 부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(안)